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호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학생 및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 ② 자체의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자체의 연구 활동’란 학위논문 발표, 대학 및 전문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7. 6. 1, 개정 2022. 2. 8.)

제 3조 (적용범위)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 6. 1)

제 4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7. 22, 2017. 6. 1)

1.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5. <삭제 2017. 6. 1>
 6. <삭제 2017. 6. 1>
 7. <삭제 2017. 6. 1>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7. 6. 1]

제 4조 의 2(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 및 연구결과물에 참여할 경우, 신고의 의무
11.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조 신설 2022. 2. 8>

제 4조 의 3(대학의 역할과 책임)

1.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 2. 8.>

제 2 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 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7. 6. 1)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2)
4. <삭제 2013. 7. 22>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의 당연직위원과 6인의 추천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② 위원장은 학사부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22)

③ 학사부총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④ <삭제 2017. 6. 1>

⑤ <삭제 2017. 6. 1>

⑥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7. 6. 1)

제 7 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7. 22)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④ <삭제 2017. 6. 1>

⑤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7. 22)

제 8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개정 2017. 6. 1)

제9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산학협력단 연구팀에 구술·서면·전화·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7. 22, 2017. 6. 1)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3. 7. 22)

[제목개정 2017. 6. 1]

제9조의 2(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신설 2017. 6.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

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6. 1]

제10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신설 2013. 7. 22)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14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3. 7. 22)

④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항 변경 2013. 7. 22, 개정 2017. 6. 1)

1. 제보내용이 제9조의 2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3. 7. 22>

⑤ 예비조사는 산학협력단 연구팀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5인 이내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중 1명을 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항 변경, 개정 2013. 7. 22, 2017. 6. 1)

제11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7. 6. 1)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개정 2013. 7. 22)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신설 2013. 7. 22)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신설 2013. 7. 22)
6. 기타 관련 증거 자료 (호 변경 2013. 7. 22)

제12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6. 1>

③ <삭제 2017. 6. 1>

④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7. 6. 1)

[제목개정 2017. 6. 1]

제13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를 위해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 중 1명을 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인의 비율을 30%이상 위촉한다.(개정 2013. 7. 22, 2017. 6. 1)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7. 6. 1>

제13조의 2(조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신설 2013. 7. 22) ① 조사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6. 1)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② 피조사자 및 제보자는 조사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척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 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④ 조사 위원은 제 1항 또는 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7. 6. 1)

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 6. 1)

제1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2)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2)

제1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1)

④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계 교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 (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 7. 22)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개정 2013. 7. 22)
4.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자의 명단 (개정 2013. 7. 22)
5. 조사결과 및 이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개정 2013. 7. 22)
6.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개정 2013. 7. 22)
7.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 (신설 2013. 7. 22)

제18조 (판정) ①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7. 22)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심의 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 6. 1)

제18조의 2(이의신청 등) (신설 2013. 7. 22)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9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2017. 6.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0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2, 2017. 6. 1)

1. 연구부정행위 (신설 2013. 7. 22, 개정 2017. 6. 1)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신설 2013. 7. 22)
- ② 총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관련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 연구팀에서 보관하여,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 · 증인 · 참고인 · 자문에 참여한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5 장 기 타

제22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25조(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상위법을 준용한다.(신설 2017. 6. 1)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